

1. 개정이유

국고보조사업의 명칭 변경, 통·폐합 및 지방이양사업 등 제도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규정을 현행화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및 해당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개정하는 한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비율을 신설하여 국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체계적 비용분담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조정
(안 별표 제1호 내지 제61호)

1) 종료사업, 지방이양사업 등을 삭제하고 및 현재 국고보조사업명에 따라 사업명을 변경함.

2) 사업의 성격, 사업의 효과가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하여 17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조정함.

나.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대상사업 신설 (안 별표 제62호 내지 제97호)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기준보조율을 규정하고 있는 36개 국고보조사업 지방비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 4대 협의체 의견수렴 완료

라. 기 타 :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 (제2조 제1항 관련)

(단위 : %)

연번	사 업 명	특별시 · 광역시		도		비고
		시	구	도	시·군	
1	체육진흥시설 지원	50	50	50	50	
2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	50	50	50	50	
3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50	50	50	50	작은도서관,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광역자치단체 30%, 기초 자치단체 70% 부담
4	전통사찰 보수정비	50	50	50	50	
5	지역문화산업 육성지원	50	50	50	50	
6	기름대비 농업용수 개발	50	50	50	50	
7	토양개량사업	50	50	50	50	
8	농산물 유통개선	50	50	50	50	
9	축산물 검사	70	30	70	30	
10	친환경농업기반구축	50	50	50	50	
11	외국인 투자유치(경상, 자본)	50	50	50	50	
12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 시설	70	30	30	70	
13	환경기초시설 운영비 지원	100	0	0	100	
14	고도정수처리 시설	100	0	30	70	
15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	100	0	30	70	
16	하수처리장 확충	70	30	50	50	
17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70	30	50	50	
18	하수관로정비사업	70	30	50	50	
19	모자보건 사업	50	50	50	50	
20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및 소아환자 관리	50	50	50	50	
21	결핵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22	한센환자 보호시설 운영	100	0	100	0	
23	한센양로자 지원	100	0	100	0	
24	정신요양시설 운영	100	0	100	0	
25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100	0	70 80	시30 군20	
26	사회복지보장시설 및 장비 지원	100	0	70	30	

2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 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 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28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주거급여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 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 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29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100	0	50	50	
30	응급의료체계 구축	100	0	100	0	
31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50	50	50	50	
32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신축	100	0	50	50	
33	노인 여가시설운영 지원	50	50	30	70	
34	지방의료원 기능 강화	100	0	100	0	
35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100	0	100	0	
36	도시철도 건설	100	0	0	0	
37	경전철 건설	100	0	0	0	
38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	100	0	50	50	
39	영유아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 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 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40	보육돌봄서비스, 육아 종합지원서비스 제공, 어린이집 교원양성 지원, 어린이집 지원 및 공공형어린이집	50	50	50	5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5 이상 이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인 경우	70	30	70	30	

	- 해당 회계연도의 전전년도의 최종예산상 시·군·구의 사회보장비 지수가 20 미만 이고 재정자주도가 85 이상인 경우	30 이상	70 이하	30 이상	70 이하	
41	어린이집 기능보강	50	50	50	50	
42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보호지원	100	0	50	50	
43	연근해어선 감척	100	0	100	0	
44	어촌종합개발	30	70	30	70	
45	어선용 기자재 공급	100	0	100	0	
46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	100	0	30	70	
47	산림병해충 방제	30	70	30	70	
48	산림경영계획	30	70	30	70	
49	산불방지 시설·장비확충 및 운영	30	70	30	70	
50	조림사업	30	70	30	70	
51	숲 가꾸기	30	70	30	70	
52	사방사업	70	30	70	30	
53	산림휴양·녹색공간 조성	70	30	70	30	
54	임도시설	50	50	50	50	
55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50	50	50	50	
56	임산물 수출촉진	50	50	50	50	
57	산림조합특화사업	50	50	50	50	
58	미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사업	100	0	100	0	
59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100	0	50	50	
60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	30	70	30	70	
61	119구조장비 확충	100	0	100	0	
62	재해 위험지역 정비	50	50	50	50	
63	방조제 개·보수(지방관리)	70	30	70	30	
64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50	50	50	50	
65	농기계임대사업	50	50	50	50	
66	농가경영안정 재해 대책비(공공시설)	50	50	50	50	
67	공단폐수종말처리시설	100	0	0	100	
68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	100	0	0	100	
69	폐기물 처리시설	70	30	30	70	
70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70	30	30	70	
71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30	70	30	70	
72	연안정비	30	70	30	70	
73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50	50	50	50	
74	해양보호구역 관리	50	50	50	50	
75	임산물 생산기반 정비	50	50	50	50	

76	산림서비스 증진	70	30	70	30	
77	농업전문인력 양성교육	100	0	50	50	
78	지역농촌지도사업 활성화	100	0	50	50	시·군농업기술센터 육성·운영 및 시설장비 보강 사업은 특광 역시 및 사군이 100% 부담
79	관광자원 개발	50	50	50	50	
80	전국체육대회 운영	70	30	70	30	
81	국제경기대회(동계대회 포함) 지원	70	30	70	30	
82	전국체전시설 지원	70	30	70	30	
83	방과 후 돌봄서비스	50	50	50	50	
84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자녀 학비 지원	100	0	70	30	
85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	70	30	70	30	
86	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화장로	100	0	50	50	
87	긴급복지지원	50	50	50	50	
88	이동통합서비스 지원·운영	30	70	30	70	
89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	50	50	50	
90	사회적기업 육성	70	30	70	30	
91	지방과학문화시설 확충사업	0	100	0	100	
92	위험도로구조 개선	도로관리청이 부담				
93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	100	0	30	70	
94	수산물식품산업거점단지 조성	30	70	30	70	
95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100	0	100	0	
96	비점오염저감사업	100	0	30	70	
97	우수저류시설 설치	100	0	30	70	

※ 비고 : 광역시와 광역시 관할 군간의 부담비율은 도와 군간의 부담비율을 적용한다.